

울산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나167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조정신청]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나16724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1. 7 선고 2022가단11454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득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황석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은영, 이나라

변론종결 2024. 5. 30.

판결선고 2024. 7. 4.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1. 7. 선고 2022가단11454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기하여 피고가 취득한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9,038,1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2.부터 2024. 5. 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배당금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1. 18.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에서 3억 7,100만 원에 별지(이하 구별을 위해 ‘이 사건 별지’라고 한다)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1. 7.경 ‘원고와 피고는 별지 기재 토지 및 지상건물이 경매로 나오자, 각 1/2씩 자금을 출연하여 위 부동산을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지출된 투자비용을 부동산 지분에 따라 정산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190,019,957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창원지방법원 2021차전4767호)을 하였다. 그런데 위 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된 별지(이하 ‘신청서 별지’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별지 목록 제1, 2, 4, 7호 기재 부동산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가 이의하여 위 사건은 소송절차(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8391호)로 진행되었다. 법원은

위 사건을 조정해 회부하였고, 2022. 1. 19. 조정기일을 진행한 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여 위 결정이 2022. 2. 8. 확정되었다. 이 사건 결정에 첨부된 별지는 신청서 별지와 동일한 것으로, 이 사건 별지 목록 제1, 2, 4, 7항 기재 부동산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소유의 각 1/2 지분을 대금 120,000,000원에 매도하고, 원고는 이를 매수한다.
 2. 원고는 2022. 3. 31.까지 피고에게 제1항 기재 매매대금 120,000,000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2022. 3. 31.까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제2항과 제3항은 상호 동시이행관계로 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라. 원고는 2022. 4. 4. 이 사건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별지 목록 제1, 2, 4,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마.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22. 8. 22. 작성된 배당표에서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3, 5, 6항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쟁점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1/2 지분권자인 피고에게 39,038,107원, 채무자 겸 쟁점 부동산의 1/2 지분권자 및 이 사건 별지 제1, 2, 4,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364,231,247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① 이 사건 결정 또는 ② 원고와 피고의 오빠 H 사이에 2022. 4. 12.경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쟁점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쟁점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기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위 배당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쟁점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 기재상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 관한 피고의 부담 부분을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원고와 피고 모두 신청서 별지의 내용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의 효력은 쟁점 부동산에도 미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보는 것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판결)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결정된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참조), 쟁점 부동산은 이 사건 결정의 기재 내용에 따라 성립하는 새로운 법률관계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 원고가 드는 판결은 민법상 화해계약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와 H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원고는, H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 하였고, 선행사건의 조정기일에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직접 출석하기도 하였는데, H는 2022. 4. 12. 원고의 소송대리인 측과 전화통화 시 쟁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위 약정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8, 9, 10,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H와 원고 사이에 쟁점 부동산의 피고 명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종국적으로 성립한 사실, H가 피고로부터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쟁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설정은, 판사 유진현, 판사 박성규

별지